

소득세분야 7



글 / 임현식 세무사

27. 퇴직금 분할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

Q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면서 자금사정 등으로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

A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면서 자금사정 등으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경우 그 우선 지급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규정과 같은 법 제148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

장현황보고시 제출하였을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

A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, 당해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,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중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

28.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

Q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품 매입시 거래처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매수실적 확인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대신하여 사업

29.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적용 범위

Q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(제조업 영위)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상적인 영업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화물차량의 매입에 투자한 것이 같은 법

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의 매입에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A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"사업용자산"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말하는 것이므로,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매입한 운반용 화물차량은 "사업용자산"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
30. 컴퓨터 등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여부

Q 섬유기계를 제조하는 개인사업자가 산업용 캐드와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컴퓨터를 구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 여부

A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자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써 개인용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법 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(기구 및 비품)에 해당하므로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

31. 신용카드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여부

Q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(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)의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규정은 신용카드 맹을 하고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

-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인지,
- 개인사업자라도 특정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인지
- 음식업 및 숙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도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

A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(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)에 의한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업종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

32.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여부

Q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의 성실신고소 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 경감제도와 관련하여 당해 연도 수입금액 계산시 당해 과세기간 중에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 실제 사업한 기간의 수입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지 여부

A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제2항 제3호의 경감대상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은 휴업기간과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

〈끝〉



즐거움은 모든 덕의 어머니다.

-괴테(독일의 문호, 1749-1832)-